

『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·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통 증설 : 4개통(안 별표13, 별표23, 별표27)
 - 통 · 리 : 563개 통리(통 396, 리 167)
⇒ 567개 통리(통 400, 리 167)
- 반 증설 : 53개반(3,895개반 ⇒ 3,948개반)
 - 62개반 증설, 9개반 감소(안 별표1, 별표9, 별표13, 별표16, 별표23, 별표27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

5. 검토의견

-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 반의 확정기준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하고, 통리는 3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개정 목적은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으로 과대·과소한 통리 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코자 함
- 주요 내용은
 - 통리는 563개 통리에서 4개통이 증설된 567개 통리이며, 그 내용은 도량동 1개통, 상모사곡동 2개통, 양포동 1개통임
 - 반은 3,895개반에서 53개반이 증설된 3,948개반이며, 그 내용은 선산읍 2개반 증, 송정동 5개반 증, 도량동 25개반 증, 형곡2동 2개반 증, 상모사곡동 11개반 증, 양포동 8개반 등이 증가된 개정안임.